

○○시 ○구 ○○동 000 - 00
○○ 세무서장
문의처 ☎ (국번없이) 126(1>5)

받는 사람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000-00
○○○ 귀하

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

국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국세청은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, 학교,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·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인터넷(www.hometax.go.kr)으로 제공하는 「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귀 기관의 적극적인 자료 제출로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

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「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」를 기한 내에('17. 1. 7.까지) 누락없이 국세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. 12.

○○세무서장(관인생략)

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【☎ 국번없이 126 1번 > 5번 선택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요령

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합니다.

- 흠택스(www.hometax.go.kr) > 신청/제출 > 연말정산간소화 > 소득·세액공제자료제출에서 오류 검증 후 제출
- 자세한 사항은 흠택스 > 자료실 (자료번호 378) [연말정산간소화] 2016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자료 제출 방법 참조
 - 전산파일을 생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자료실의 『2016년_전산매체제출 요령(의료비-요양기관)』 참조

② 전체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를 제출합니다.

- ‘전체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(보험+비보험)’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 -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‘자료제출 제외(거부) 신청’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.
 - 미용·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세액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③ 자료 제출 시 담당자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- 근로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자료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연락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④ 추가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- 근로자나 세무서담당자의 요청으로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제출 할 경우, 반드시 전체자료를 ’17년 1월 18일, 20:00시까지 제출 하셔야 간소화에서 자료가 조회됩니다.

⑤ 제출대상 기간 : 2016년 1월 1일 ~ 2016년 12월 31일

⑥ 제출기한 : 2017년 1월 7일

- 월별, 분기별 등 수차례 분할하여 상시 제출이 가능합니다. 다만, 기간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.

⑦ 유의사항

- 엑셀은 5MB이하의 경우에만 제출 가능, 그 이상은 텍스트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5만건 이상 대량 자료는 18시 이후 제출을 권장합니다.
- 자료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오류를 제외하고 정상 제출됩니다.
예) 총 100건, 주민번호 오류 10건의 경우 90건은 정상적으로 제출됨
향후 10건 오류를 수정하여 재제출시 100건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
- 1.15. 이후 제출분은 1.20.부터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.